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6. 11., 박희승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원회(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원회(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원회(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원회(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5.2.11.) 상정,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

정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희승의원)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22,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2024. 12. 10. 가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안반영폐기